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2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3
2.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7
3.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10
4. 부칙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8.
3. 회 부 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시 구성원수가 <u>100</u> 인 이상일 것	4. ----- <u>50</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며,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고, ④ 최근 1년 이상 공

익활동실적이 있으며, 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⑥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¹⁾

이 때 상시 구성원 수 요건의 구비 여부는 후원자 등 일시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어, 상시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없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임.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수 요건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 100인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을 각종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제한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로서,

보조금 수급을 위해 각종 단체가 난립하거나 단체의 운영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누계		15,452	15,559	13,870	13,941	14,023
	중앙행정기관	1,729	1,747	1,474	1,480	1,488
	시·도	13,723	13,812	12,396	12,461	12,535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362	107	△1,689	71	82
증감률(%)		2.4	0.7	△10.9	5.1	0.6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상시 구성원 수 완화시 의사결정이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단체의 대표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부실단체가 난립하거나 형식적인 단체 설립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특별시¹⁾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최소한의 조직적 실체와 대표성·공익성 확보가 어렵고 단체 난립이 우려되며, 보조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형식적 단체 설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보조금 수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단체의 난립 가능성이 우려되고, 형식적 등록단체의 증가, 휴면·유령단체 누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저하 등 제도 운영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 기준 완화에 앞서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기반을 통해 단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본연의 취지로, 요건 완화 시 보조금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단체가 증가하여 유사·소규모 단체의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 ----- 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의 장은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함.²⁾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³⁾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영비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민간단체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3대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경우 개별법에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 않음.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자발성·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조직으로 운영비 지원시 단체의 자립기반과 자율성·독립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민간단체의 존속이 아닌 공익 증진 목적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 운영비 지원시 사업비 지원이 축소되어 공익활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공익사업 성과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특별시는 운영비 지원시 공공재원 의존을 높여 단체 자생성과 민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운영비 지원 시 사업비 축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단체의 독립성, 자율성이 훼손되고 실질적인 공익활동보다 단체의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운영비 지원 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들어 공익활동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운영비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체의 자립기반과 민간단체 본연의 자율성, 독립성 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단체 자발적 활동 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개정안은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특례 요건으로 공익에의 부합, 특례 부여의 보충성, 명확성·구체성 등 삼고 있으므로⁶⁾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특례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비영리민간단체는 각종 공익 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운영되는 민간단체로서,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특례 신설이 보다 적절한 경제적 지원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행정안전부는 국유·공유재산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다른 단체·기관·소상공인·주민 등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이중 지원에 해당하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가·지방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부 수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은 민간 사용 시 사용료 부과가 원칙으로 기존 원칙을 배제할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과 사업에서 중대한 공익성을 확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개정안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일회성 행사·회의 또는 사무실 등 상시적 공간 제공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단체와 달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만 공공재산 무상사용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공자산 관리의 형평성 및 무상사용의 예외적 허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50